

국민연금 적용소득의 축소신고에 따른 급여변화 분석

강 성 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회피로 인해 실제 제도가 목적하고 있는 수준만큼의 연금 급여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급여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빈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후생비용의 증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생손실 개념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실제소득 수준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개인의 급여수준이 감소(개인손실)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급여수준의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함으로써(사회후생손실) 빈곤우려라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볼 때 고소득계층일수록 자신의 신고소득수준을 낮춤으로써 급여수준 감소 비율이 커질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1. 서 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의 불비 혹은 미비로 인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후생에의 기여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객관적인 실태 자료에 의한 분석적 기반에 의해서라기 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선호방식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후생수준을 평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객관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후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 것인지에 대해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물론 공적연금의 제도적 장점은 한세대를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막연한 불신에 따른 제도 회피로 수령 가능한 급여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경제학 일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생손실의 개념과 관련된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개념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신과

*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인식부족이 개인의 연금수혜 수준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 근로시기에 충분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노후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는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한데서 오는 사회적 후생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후생경제학에서 분석하고 있는 후생손실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집단을 사업장,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가입유형에 따른 현상을 분석하고, 또한 지역가입자를 소득계층별(3분위) 구분하여 소득 신고 축소에 따른 '사적요인 급여수준 감소분(이하 개인손실)'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손실분(이하 사회후생손실)'을 측정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¹⁾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후생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Gini 계수법, 엡킨슨 지수, 10분위 계수법 등을 들 수 있으며(이준구, 1992), 다른 측면에서는 후생손실의 정도를 통해 후생수준의 변화여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같은 소득재분배 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후자의 모형(후생손실 변화 모형)을 이론적 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이 소득과약 수단의 불비로 인해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실제소득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액에 일정정도 비례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사적 금융상품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높은 급여액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인해 보장해 주고자 하는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스스로 노후생활 준비를 미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만큼 제도적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자신의 실제 소득 수준보다 낮게 신고한 가입자와 실제소득과 유사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신고한 가입자간의 급여액 산출을 통해 신고소득 축소에 의한 '개인손실' 과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손실'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분석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모형을 기반으로 할 때 분석 가능한 자료에 대해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집단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결론 및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회적 요인에 의한 후생손실 부분도 연금급여액의 감소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급여수준의 하락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신고소득만 축소에 따른 효과부분'과 '소득대체율 감소에 의한 효과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전자는 사적요인에 의한 나타나는 현상(개인손실)이고, 후자는 이러한 사적요인이 축적되어 나타난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부분(사회후생손실)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II. 이론적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의 이론적 근거는 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독점시장의 후생손실’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제도를 경제학적 논리에 맞추어 분석한다는 것이 일면 무리한 접근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극히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분석에 원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 시장이론에서 독점시장의 존재는 단기적으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 착안하여 분석의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낮은 수용성은 신고소득 축소 등 제도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것은 가입자 개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내에서 보장해 주려는 수준을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수준(후생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그 줄어든 부분만큼 보장수준이 사라진 것이므로 자중손실(deadweight loss) 개념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단계에서 제도가 주는 일종의 특혜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게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정착이 원활하게 되지 못함으로써 노후에 빈곤층으로 빠질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의 시장이론 등에서 논의된 것이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분석적 접근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아래에서는 경제학 일반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후생손실과 이에 따른 이론모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후생손실에 대해 살펴보면, 완전경쟁적 시장에서의 단기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균형점)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는 균형점까지 가격보다 높은 효용을 주는 면적만큼 소비자잉여를 향유하게 되나(부록 1. 그림 참조) 독점화되면 한계비용곡선(공급곡선)과 한계수입곡선²⁾의 교차점에서 상품량이 결정되고 줄어든 상품양 만큼 발생하는 후생수준 감소분이 되는데 이것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한다.³⁾

이제 이러한 경제학적 이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할 이론적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보험료)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경제학적 모형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X축에는 소득수준을, Y축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되어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제도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지만⁴⁾, 특정시점을 고려할 때 보

2) 일반적으로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수요곡선 기울기보다 크게 나타나서 매우 가파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독점시장에서는 균형생산량은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생산량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3) 다른 표현으로는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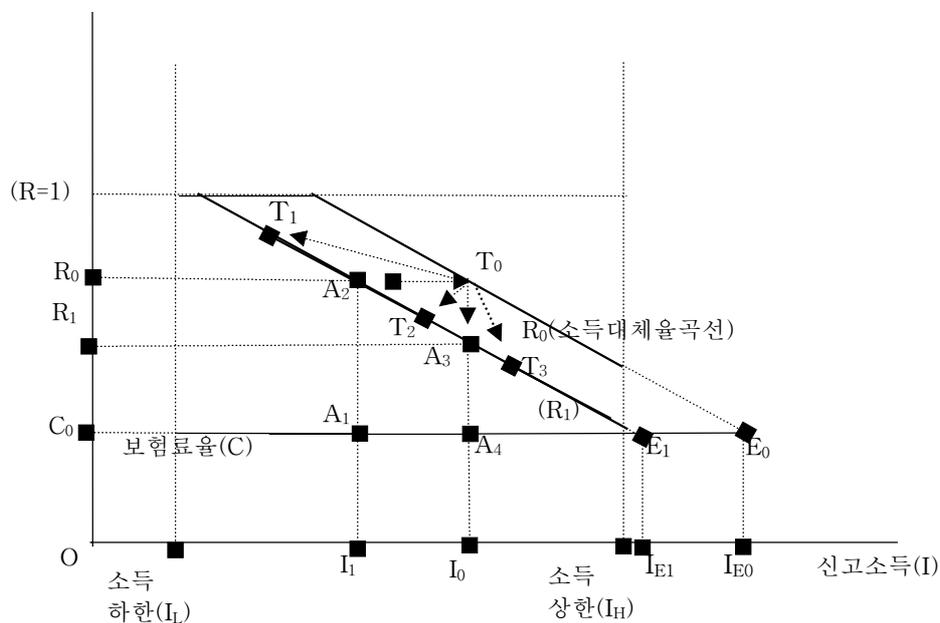
4)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상향조정하여 왔으며, 소득대체율은 이들 집단을 함께 고려하여 가입기간 및 기여수준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1988년 제도 도입당시 40년 가입기간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70%였던 것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안정화를 고려하여 1998년 말에 소득대체율은 60%로 하향조정되었다. 또한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불가

보험료율은 신고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일정비율로 적용되므로 수평하게 나타날 것이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현상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므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제도의 수혜정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또한 급여혜택은 은퇴시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기에 내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낮추어서 소득을 신고하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만큼 목적 미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국민연금제도 인식 부족에 따른 개인손실 및 사회후생손실

보험료율(C)
소득대체율(R)



[그림 1] 을 설명하면, 자신의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이 일치하는 가입자(I_0)를 가정할 때 현실적으로 동 가입자는 자신의 신고소득을 그림과 같이 T_1, A_2, T_2, A_3, T_3 방향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고소득을 자신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경우에 경우의 수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나 현실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 T_2, A_2 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보험료 수준과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동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실제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한다면 자신의 월 보험료 수준은 $\square OC_0A_4I_0(I_0 \times C_0)$ 이 된다. 이때 동 보험료 수준을 일정기간(예,

피한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득대체율 수준을 낮추려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의 기반 하에 분석하고자 하므로 현시점 전후의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0년 혹은 20년) 납부하고 동일기간동안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신이 수급하게 될 월 급여수준은 사각형인 $\square OR_0T_0I_0(I_0 \times R_0)$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보험료 납부액을 제외한 순급여 수준은 $\square C_0R_0T_0A_4$ 로 나타낼 것이다.⁵⁾

그런데 현실에서의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 수준을 I_1 으로 낮추어 신고하게 된다면 이것은 소득대체를 곡선 R_0 를 R_1 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개인손실 부분과 사회후생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개인의 총 급여수준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개인손실 부분을 살펴보면, 소득대체율 곡선의 이동으로($R_0 \rightarrow R_1$)으로 급여수준이 변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불변하는 가입자의 경우⁶⁾에서 나타나는 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회후생손실분은 없고 개인손실부분만 발생하여 순급여수준은 $\square C_0R_0A_2A_1$ 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 $\square A_1A_2T_0A_4 (\square C_0R_0T_0A_4 - \square C_0R_0A_2A_1)$ ' 만큼 자신의 급여수준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후생손실 부분을 살펴보면, 이는 신고소득 축소로 소득대체율을 좌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에게 급여액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⁷⁾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제소득 대로 신고하였다면($I_0 = I_1$), I_0 로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곡선이 R_0 가 되고 순급여액은 $\square C_0R_0T_0A_4$ 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소득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소득대체율 곡선이 R_1 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손실을 보게되는 부분인 ' $\square R_1R_0T_0A_3 (\square C_0R_0T_0A_4 - \square C_0R_1A_3A_4)$ '가 사회후생손실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고소득을 실제소득 보다 낮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분은 성실소득 신고로 인해 개인이 누릴 수 있었던 급여혜택을 자신이 제도를 회피함으로써 성실소득신고자에게 발생시킨 사회적 소득보장 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⁸⁾

한편,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제도적 보장정도를 수익비⁹⁾ 개념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

5) 그림에서 $\square OC_0A_3I_0$ 부분은 보험료부담과 급여수준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그린 것이므로 동 영역을 상회하는 부분은 순급여 수준이 된다.

6) 실제소득과 신고소득 모두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갖게되는 가입자는 실제소득 및 신고소득 모두 평균소득 가입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소득가입자를 고려하면 그림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7) 이러한 성실신고자에 대한 급여손실분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두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을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보장수준의 감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보장수준 감소부분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8) 그림에서 T_0 를 기점으로 하여 T_1 으로 갈수록 개인손실부분이 커지고 T_3 으로 갈수록 사회후생손실이 커지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경우는 두 부분이 일정정도 공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9) 수익비란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은퇴후 수급하는 연금급여 총액(TB)과 근로기간중 납부한 보험료 총액(TC)의 비율로 정의됨.

$$TCR = TB / TC$$

- 연금급여 총액 TB와 보험료 총액 TC는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임.

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선(C) 아래 면적의 보험료액과 급여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한다면(수익비 = 1) 보험료 선 이상에 있는 소득대체를 면적은 수익비가 1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 체계 내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수익비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표 1참조) 앞의 [그림 1] 과 같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곡선을 그릴 수 있다.

<표 1>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의 소득계층별 수익비

가입년도	가입기간	1/4분위소득 (34만원)	2/4분위소득 (68만원)	3/4분위소득 (204만원)	4/4분위소득 (360만원)
1988	20	3.20	2.77	2.22	1.56
	40	2.97	2.58	2.09	1.48
1999 (사업장)	20	2.64	2.31	1.88	1.37
	40	2.75	2.40	1.95	1.42
1999 (지역)	20	3.09	2.70	2.20	1.59
	40	2.98	2.60	2.12	1.53
2004	20	2.78	2.43	1.97	1.43
	40	2.81	2.46	2.00	1.45
2030	20	3.07	2.68	2.18	1.58
	40	2.96	2.59	2.10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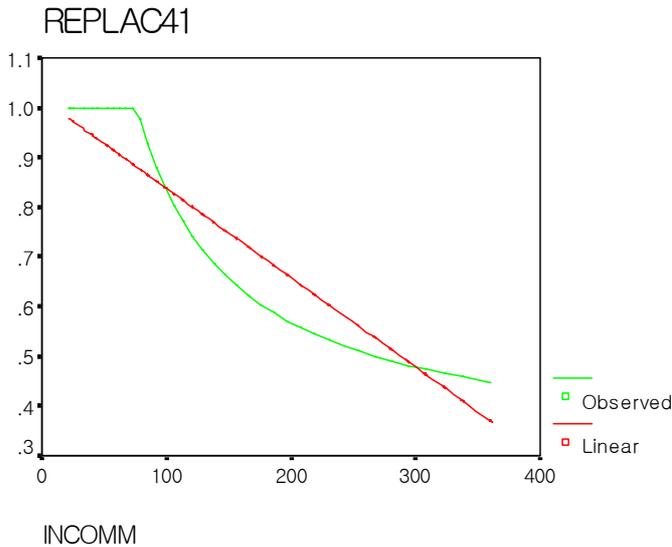
주 : 9% 보험료율, 60% 소득대체율 적용(할인율은 기금투자수익률 사용).
 자료 : 국민연금 관리공단 내부자료.

그림에서 보듯이 현행 제도상 소득상한선인 360만원 선에서도 수익비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신고소득을 실제소득 보다 줄여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그만큼 사회보장 혜택수준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수준을 낮게 할수록 손실을 보게되는 이유이다. <표 1>에서는 저소득계층일수록 수익비가 높아 소득재분배를 고려하고 있으며, 고소득계층에서도 모두 수익비가 1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의 소득보장 측면을 중요시한 제도적 설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대체율은 100% 이상 보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소득대체율의 상한선($R=1$)이 존재하므로 무한히 증가하는 곡선은 아니다. 또한 소득대체율 곡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직선형태는 아니며, 보다 정확한 표현은 우하향하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선형으로 가정하고 후생손실 부분을 산출하였다.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수준과 소득대체율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 와 같이 나타난다.

-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근로기간중 기여한 보험료보다 노후에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수익비는 할인율 설정(시장이자율, 시간선호율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절대적 평가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상 한계가 있음.

[그림 2] 소득(INCOMM)과 소득대체율(REPLAC41)과의 관계



주: $R^2 = 0.872$

III.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1. 분석자료 설명 및 기술통계 분석

이제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모형 하에서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신고소득 축소에 따른 개인손실과 사회수행손실 수준을 측정한다. 먼저 이를 위해 분석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변수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무, 가입 및 납부이력, 신고소득 및 실제소득, 납부보험료 등이다. 그러나, 노동패널 자료에는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신고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되고 있지 못하다. 다행히도 신고소득 수준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역산하면 산출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 있어 큰 무리는 없으나, 가입이력은 전혀 파악할 수 없으므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태를 반영한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2003년부터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개인별로 조사된 사항이므로 6년간의 노동패널 자료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2003년 자료로 한정되었다. 비록 패널자료에 의한 분석은 수행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개인별 소득과 보험료 자료가 존재하므로 분석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접근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와 경제적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의 차이를 밝혀 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수준과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차이를 규명하고 급여감소 수준을 측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 조사대상자 중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때 국민연금 납부자

수는 총 3,530명 중 17.7%인 624명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이들 가입자의 국민연금 월평균 납부액은 8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0.4%(65명/624명)는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고, 이들의 사적연금 월평균 납부액은 17만 4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국민연금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연령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 납부액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용자와 자영자가 이에 해당하며, 사업장 가입자는 5인이상 사업장의 피용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은 자신의 실제소득(조사소득)을 고려할 때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납부액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의 신고소득을 낮게 함으로써 보험료액을 줄이려는 것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실제소득에 비해 신고소득의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실제 급여액 또한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패널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전 총연간소득은 2002년 동안의 연간총소득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 및 사적연금 납부액은 2003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각 연도의 평균으로 제시하였다(표 2참조).

<표 2>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기초통계 분석

(단위 : 세, 만원)

구분		연령	국민연금 납부액	사적연금 납부액	세전총연간소득 (2002)
사업장가입자	Mean	55.4	7.9	17.7	1,957.9
	N	148	140	15	142
	Std. Deviation	3.6	5.0	16.1	1,513.6
지역가입자	Mean	55.6	8.7	17.2	2,537.6
	N	476	446	50	392
	Std. Deviation	4.2	5.5	14.02	2,236.6
전 체	Mean	55.5	8.5	17.4	2,383.4
	N	624	586	65	534
	Std. Deviation	4.0	5.4	14.4	2,083.6

주 : 1) 사업장 가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업장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 일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됨(2003년 6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소득(조사소득), 신고소득 및 이에 따른 각각의 보험료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실제소득은 조사상 연간총소득으로 하였으며, 이를 표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월보험료를 산출하였다. 한편 신고소득은 조사 보험료를 신고소득으로 역산하여 산출하였다(표 3참조).

<표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 및 보험료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조사소득 ¹⁾	환산 월보험료 ²⁾	환산 신고소득 ³⁾	조사 보험료	
국민연금가입 유형	사업장가입자	Mean	146.2	6.6	168.2	7.9
		N	112	112	108	108
		Std. Deviation	95.1	4.3	93.3	4.9
	지역가입자	Mean	173.2	11.3	131.8	8.5
		N	309	309	363	362
		Std. Deviation	98.4	6.4	82.2	5.4
	전체	Mean	166.0	10.0	140.1	8.4
		N	421	421	471	470
		Std. Deviation	98.1	6.3	86.1	5.3
소득수준 ⁴⁾	1분위 (하위 33%)	Mean	59.9	3.9	81.6	5.3
		N	63	63	62	62
		Std. Deviation	19.9	1.3	59.7	4.0
	2분위 (중위 33%)	Mean	125.9	8.2	112.4	7.3
		N	122	122	118	118
		Std. Deviation	24.5	1.6	52.3	3.4
	3분위 (상위 33%)	Mean	277.2	18.0	192.6	12.5
		N	124	124	109	108
		Std. Deviation	61.2	4.0	92.3	6.2
	전체	Mean	173.2	11.3	136.0	8.8
		N	309	309	289	288
		Std. Deviation	98.4	6.4	84.5	5.6

주 : 1) 월 조사소득은 월 신고소득과의 비교를 위해 국민연금 적용 상한소득인 360만원 이상의 금액은 모두 360만원으로 하여 산출.

2) 조사소득을 현행 제도 상 보험료 수준으로 환산.

3) 조사 보험료에 의해 역산함.

4)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3분위 수준으로 구분.

가입유형별로 볼 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조사소득보다 신고소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사소득이 기억에 의해 응답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조사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하려는 성향과 사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하는 심리적 성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사소득에 비해 신고소득이 높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사업장가입자의 조사소득과 신고소득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조사소득에 비해 신고소득 수준이 자신의 실제소득에 약 76%수준(138.1만원/173.2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문제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인 하위 33% 소득계층에서는 조사소득보다 신고소득이 높은 것은 신고소득 추정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보험료가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 때문) 실제소득과 거의 유사하게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사소득보다 신고소득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본다면 자신

의 소득수준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수령하게될 급여수준 또한 낮아질 것이므로 사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 급여수준이 줄어드는 현상이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이러한 조사소득과 신고소득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가입유형별, 소득수준별로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68.6%가 조사소득보다 신고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표 3>에서 추측한 바와 같이 신고소득의 평균소득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서와 동일한 논리로 신고소득은 실제보다 상향 추정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조사소득과 신고소득이 거의 유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약 70%가 자신의 조사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를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신고를 낮게(조사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 조사소득과 신고소득의 차이

구분			조사소득 > 신고소득	조사소득 < 신고소득	전체
국민연금가입유형	사업장가입자	빈도	33	72	105
		비율	31.4	68.6	100.0
	지역가입자	빈도	219	84	303
		비율	72.3	27.7	100.0
	전체	빈도	238	170	408
		비율	58.3	41.7	100.0
소득수준 (지역가입자만)	1분위 (하위 33%)	빈도	49	56	105
		비율	46.7	53.3	100.0
	2분위 (중위 33%)	빈도	86	18	104
		비율	82.7	17.3	100.0
	3분위 (상위 33%)	빈도	84	10	94
		비율	89.4	10.6	100.0
	전체	빈도	219	84	303
		비율	72.3	27.7	100.0

2. 실증분석

가. 분석을 위한 가정 및 모형

이제 실증분석을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의 소득수준 혹은

은 보험료 수준이 은퇴할 때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분석시작 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동일한 현재가치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노령연금 외에 장애, 유족연금 등 파생 연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즉, 급여산식에서 기본연금 급여액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근로시기에 실업 등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납부예외나 체납은 없는 것으로 한다. 넷째, 근로기간 동안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로의 상호이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는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에 따른 제도상 순수효과를 보는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 모든 사람은 동일기간 가입하고 동일기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섯째, 한 세대만의 효과를 살펴본다. 즉, 인구가정변수인 출생률과 사망률 변수는 불변이고 국제간 인구이동도 없는 것으로 한다. 일곱째, 경제 변수 중 이자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변수 등 할인율 변수는 모두 동일하고 불변(혹은 0)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정을 종합하면, 본 모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는 변수는 소득수준, 보험료 수준, 가입기간으로 이들 변수에 대한 변화정도로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분석모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자 특성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였다. 이들 가입자가 40년(혹은 20년) 동안 동일보험료를 납부(2003년 기준으로 사업장 4.5%, 지역 6.5% 적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각각의 월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은 <식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 가입자 특성별 보험료 결정

- 사업장가입자 월보험료 = 0.045 * 직전연도 월 임금소득(근로소득)
-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 0.065 * 당해연도 월 신고소득(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식 1>의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5>과 <표 6>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가입자 중심으로 출발하여 1995년 지역가입자를 포함하면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유형별로 보험료율은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급여체계는 동일한 체계에서 관리되고 있다.

<표 5>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1988~1992	1993~1997	1998~1999.3	1999.4~2009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	-	2.0	3.0	-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6).

<표 6>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1995. 7. ~2000. 6.	2000. 7. ~2001. 6.	2001. 7. ~2002. 6.	2002. 7. ~2003. 6.	2003. 7. ~2004. 6.	2004. 7. ~2005. 6.	2005. 7. 이후
보험료율	3	4	5	6	7	8	9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6).

<표 7>에서 국민연금 급여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에 구분없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의 급여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당시 70%(40년 가입기준)의 소득 대체율에서 시작하여 1998년에 60%(40년 가입기준)의 소득대체율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급여수준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을 산출하고 자신의 소득월액(B값)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급여수준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급여산식 변화

연도		1988~1998	1999~2009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40년 가입기준	70	60
	20년 가입기준	35	30
급여산식		기본연금액=2.4(A+0.75B) (1+0.05n) 기본연금액=1.8(A'+B) (1+0.05n) A : 연금수급전도도의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 A' : 연금수급직전 최근 3년간의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 B :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표준소득월액 (소득비례부분)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2.4 : 평균소득자 기준 20년(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35%(70%)로 만들어주는 계수 1.8 : 평균소득자 기준 20년(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30%(60%)로 만들어주는 계수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1년당 급여액 가산율	

<식 1>에 의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사업장 가입자는 5인 이상 피용자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의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신고소득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재 9%수준이지만 사용주가 4.5%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본인 부담은 4.5%인 실질 부담수준을 적용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매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상향시켜 2004년 7월 이후 현재는 보험료율이 8%로 적용되고 2005년 7월 이후에는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인 9%로 적용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 2003년 시점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6차년도 노동패널의 전체적인 조사시점이 2003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동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2003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7월부터 7%로 되었으므로 2003년 동안은 연간평균 보험료율인 6.5%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01).

한편, 국민연금에서의 적용소득은 45등급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조사소득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이제 이러한 보험료를 40년(혹은 20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수급시 수령하게 될 월 급여수준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식 2> 가입기간별 급여수준 결정(실제소득=신고소득)

$$\bigcirc 40년 가입시 월 급여수준 = 1.8 \times (A1 + B1) \times (1 + 0.05 \times 20) / 12개월$$

$$\bigcirc 20년 가입시 월 급여수준 = 1.8 \times (A1 + B1) / 12개월$$

주 : A1은 실제소득(조사소득)에 의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1은 가입자 자신의 소득월액(실제소득)

<식 2>는 앞의 <표 7>의 1999년 이후 급여산식(현행)을 적용하여 제시한 것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일반적인 가입기준 기간은 40년으로 하여 평균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40년 가입기간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위한 기본적 가입기간은 20년이므로 20년 가입시 월 급여수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어 10년이 되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으나 감액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식 1>과 <식 2>에 의해 조사소득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실제 납부하게 될 보험료가 결정되고, 이러한 보험료를 매월 동일하게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40년 혹은 20년을 채우게 되면 제도설계 시 목표 급여수준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불비로 인해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제도가 의도하던 보장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있다.

이제 현실에서의 납부보험료와 급여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납부보험료에서 자신의 신고소득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조사소득)과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손실부분과 사회후생손실 부분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역산하여 <식 3>과 같이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식 3> 가입자 특성별 신고소득 추정

$$\bigcirc 사업장가입자 신고소득(추정액) = (\text{월 납부보험료} / 0.045) = (22.2 \times \text{월 납부보험료})$$

○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추정액) = (월 납부보험료 / 0.065) = (15.4 × 월 납부보험료)

이렇게 추정된 신고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40년(혹은 20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수급 시 수령하게 될 월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식 4> 가입기간별 급여수준 결정(실제소득 ≠ 신고소득)

○ 40년 가입시 월 급여수준 = $1.8 \times (A2 + B2) \times (1 + 0.05 \times 20) / 12$ 개월

○ 20년 가입시 월 급여수준 = $1.8 \times (A2 + B2) / 12$ 개월

주 : A2는 신고소득에 의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2는 가입자 자신의 추정신고소득

<식 4>와 <식 2>의 차이는 급여산식에 실제소득(조사소득)을 사용하느냐 추정된 신고소득을 사용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모두 동일하다.

이제 소득을 축소신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변화를 개인손실 부분과 사회후생 손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식 5>, <식 6>, <식 7>은 이에 대한 설명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식 5>에서 축소신고로 인한 총 급여감소 수준을 살펴보면, ‘자신의 실제소득과 실제소득대체율을 곱한 값’에서 ‘신고소득수준과 신고소득대체율을 곱한 값’을 감해주면 개개인의 축소신고로 인해 변화하는 급여액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하면 총 급여수준 변화 분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5> 급여수준 총감소 함수

$$\sum_{i=1}^n [(실제소득 \times 실제소득대체율) - (신고소득 \times 신고소득대체율)]_i$$

<식 5>에서의 변화분 즉, 급여감소액에는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사적요인에 의한 급여감소분(개인손실)과 소득신고를 줄임으로써 소득대체율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소득보장 감소분(사회후생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겠다.

사적요인에 의한 급여수준 감소분(개인손실)은 실제소득과 신고소득간의 차액에서 실제소득대체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식 6참조). 즉, [그림 1] 에서 $\square A_1A_2T_0A_4$ 에 해당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식 6> 사적요인에 의한 급여수준 변화(개인손실) 함수

$$\sum_{i=1}^n [(실제소득 - 신고소득) \times 실제소득대체율]_i$$

한편, 사회적 보장수준 감소분은 ‘실제소득대체율과 신고소득대체율의 차이’에서 자신의 신고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개인손실 함수와 달리 사회후생손실 함수에 의한 산출 값은 변화된 소득대체율의 증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¹⁰⁾ 즉, [그림 1]에서와 같이 소득대체율이 증가한 경우($T_0 \rightarrow T_1$)와 소득대체율이 감소한 경우($T_0 \rightarrow T_2$ 혹은 T_3)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 신고함으로써 사적요인에 의한 급여수준이 매우 많이 감소될 수 있어 전체적인 급여감소액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식 7> 사회적 보장수준 변화(사회후생손실) 함수

$$\sum_{i=1}^n [(실제소득대체율 - 신고소득대체율) \times 신고소득]_i$$

나. 분석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제소득 및 신고소득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수준 변화(개인손실 + 사회후생손실)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자 유형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소득계층별로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므로) 소득수준을 3분위로 구분하여 그 현상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이론상 실제소득과 신고소득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급여수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와 동일 제도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에 의해 A값(평균소득월액)이 변화하게 되므로 A값 변화분 만큼 사업장가입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사업장가입자의 급여수준 변화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격차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므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소득계층을 고소득, 중위소득, 저소득층으로 3분위로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효과도 분석하였다.¹¹⁾

먼저,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 축소로 인한 총 급여수준 감소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전체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40년(혹은 20년) 가입기준으로 ‘조사소득에 의한 급여액’은 월평균 97만원(50만원), ‘신고소득에 의한 급여액’은 월평균 92만원(46만원)으로 나타나 월 5만원(4만원) 정도 급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10) 물론 사적요인에 의한 급여감소 부분(개인손실)도 실제소득보다 높은 신고소득을 가정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1) 동일한 소득으로 응답한 사람이 특정 소득수준에 밀집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분위를 세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나타나는 조사소득과 신고소득 기준에 의한 급여액의 차이는 A값 변동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¹³⁾. 즉, 국민연금 급여체계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표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급여산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 정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될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표 8> 가입유형별 소득종류에 따른 월 급여액

(단위 : 만원, 명)

구 분		조사소득기준		신고소득 기준	
		40년간입	20년간입	40년간입	20년간입
사업장	평균	97	50	92	46
	N	110	110	108	108
지역	평균	104	53	80	41
	N	322	322	363	363
1분위 (하위 33%)	평균	63	36	64	34
	N	107	107	105	105
2분위 (중위 33%)	평균	101	50	77	39
	N	108	108	104	104
3분위 (상위 33%)	평균	148	74	100	50
	N	107	107	94	94
전체	평균	102	53	82	42
	N	432	432	471	471

주 : 가입기간을 40년과 20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함.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40년(혹은 20년) 가입기준으로 ‘조사소득에 의한 급여액’은 월평균 104만원(53만원), ‘신고소득에 의한 급여액’은 월평균 80만원(41만원)으로 나타나 월 24만원(12만원) 정도 급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약 5배(20년 가입기준시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훨씬 낮게 소득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 수급하게 될 국민연금 급여수준도 그만큼 감소시킬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이를 지역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분위 계층에서는 조사소득과 신고소득 기준에 의한 급여액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급여액의 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신고소득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고 급여수준도 이에 비례하여 적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12) 20년에서 40년 가입기간에 따라 정비례하여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제도상 소득대체율을 100%를 넘지 않게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물론 조사과정에서 응답소득과 보험료 금액간의 기억의 불안정 문제로 발생하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가입종별 소득계층별 월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신고소득 축소에 따른 급여감소 효과를 살펴본다.

급여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9>과 같이 각 요인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총 급여감소비율(D)'은 [그림 1]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손실 비율(D1)'과 '사회후생손실비율(D2)'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개인손실 비율(40년 가입기준 8.4% 감소)은 '실제소득(조사소득) 기준에 의한 급여수준'(표 7에서 40년 가입시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102만원)에 대한 '개인손실분'(월 평균 8만 6천원)의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후생손실 비율(40년 가입기준 8.7% 감소)은 '실제소득 기준에 의한 급여수준' 대비 '사회후생손실분'(월 평균 8만 8천원)의 비율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총 급여감소 비율은 이 두 가지 효과의 합으로 40년 가입기준으로 17%, 20년 가입기준으로 18%로 나타났다.

<표 9>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변화 분석

(단위 : %)

구분	총급여 감소비율(D)		개인손실 비율(D1)		사회후생손실 비율(D2)	
	40년가입	20년가입	40년가입	20년가입	40년가입	20년가입
사업장	3.0	5.5	-20.6	-23.0	23.5	28.6
지역	21.6	22.0	17.8	12.9	3.8	9.1
1분위(하위 33%)	-1.8	4.7	-31.6	-46.3	29.7	51.0
2분위(중위 33%)	23.6	22.8	23.7	23.7	-0.1	-0.9
3분위(상위 33%)	32.0	31.5	37.3	37.3	-5.3	-5.8
합계	17.0	18.0	8.4	4.1	8.7	13.9

주 : 1) '-' 값은 급여증가를 의미함

2) $D=D1+D2$

3) D1은 [그림 1] 에서 신고소득축소에 따른 개인손실분(□ $A_1A_2T_0A_3$) D2은 [그림 1] 에서 소득대체율 감소에 따른 사회후생손실분(□ $C_0R_1T_1A_1$)

이를 국민연금 가입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40년 가입기준으로 볼 때 개인손실 비율은 -20.6%로 나타나고 사회후생손실 비율은 23.5%의 효과가 나타나서 총 급여기준으로 3.0%의 급여감소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장가입자는 실제소득에 유사하게 신고소득 함으로써 개인손실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 축소에 의해 사회적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개인손실 비율 및 사회후생손실 비율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총급여 감소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가입자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볼 때 저소득계층에서는 개인손실 비율이 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실제소득과 유사하게 소득신고

14)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조사소득(실제소득)에 비해 신고소득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득조사에 대해서는 축소하려는 성향,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높게 응답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를 하여 그만큼 급여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사회적 보장 수준 측면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급여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지역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신고소득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분위, 3분위 가입자의 개인손실 비율은 상당히 높고 사회후생손실 비율은 매우 낮은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실제소득과 신고소득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총급여감소 비율이 매우 낮아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경우는 소득계층별로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을 유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일치하므로 제도도입으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제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제도도입 취지가 근로시기와 은퇴시기간에 소득보장을 고르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를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노후 공적소득 보장이 감소됨으로써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IV. 결론 및 요약

조사소득을 실제소득으로 가정하고, 신고소득은 보험료 납부액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실제소득과 신고소득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급여수준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신고소득 감소로 인한 효과인 ‘사적요인에 의한 급여수준 감소(개인손실)’와 소득대체율을 변화시키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보장수준 감소(사회후생손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조사소득을 실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나 노동패널 자료가 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6년 동안 패널조사 대상자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응답하는 소득 및 보험료 수준이 횡단면 자료처럼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응답자에 비해 보다 정확한 자료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소득을 실제소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보험료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사실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신고소득을 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조사소득과 신고소득을 활용하여 가입자 유형별,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였으며, 가입자 유형에서는 사업장가입자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가입자가 어느 정도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손실부분도 발생하는 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가입자만 고려하여 소득계층을 3분위로 구분할 때 저소득계층에서는 자신의 소득과 신고소득을 유사하게 하나 고소득계층일수록 자신의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사회적 손실분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가입자는 신고소득을 실제소득과 유사하게 할수록 현 제도 하에서 급여수준이 상향할 수 있고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방안』, 2003.6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01.

_____, 『국민연금법령집』, 2003.

한국노동연구원(<http://ns.kli.re.kr/>), KLIPS 코드북, 각년도